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도

2025.나라장터 엑스포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안내 **CONTENTS**



1 2단계경쟁 제안요청

2 2단계경쟁 제안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개요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요청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구매시 제안요청 (일반물품 5천만원)

-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 5개 이상을 제안요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격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방법 : 종합평가, 표준평가
 - * 최저가평가는 '17.8.1부터 폐지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구매시 의무적으로 공고를 통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5억 미만도 선택 가능)

-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 및 수량을 공고하고, 조건 충족 모든 계약업체의 물품 및 가격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방법 : 종합평가, 표준평가
 - * 단, 평가절차 및 기준은 달리 적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참조('24.8.29 개정))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안내 **CONTENTS**



1

2단계경쟁 제안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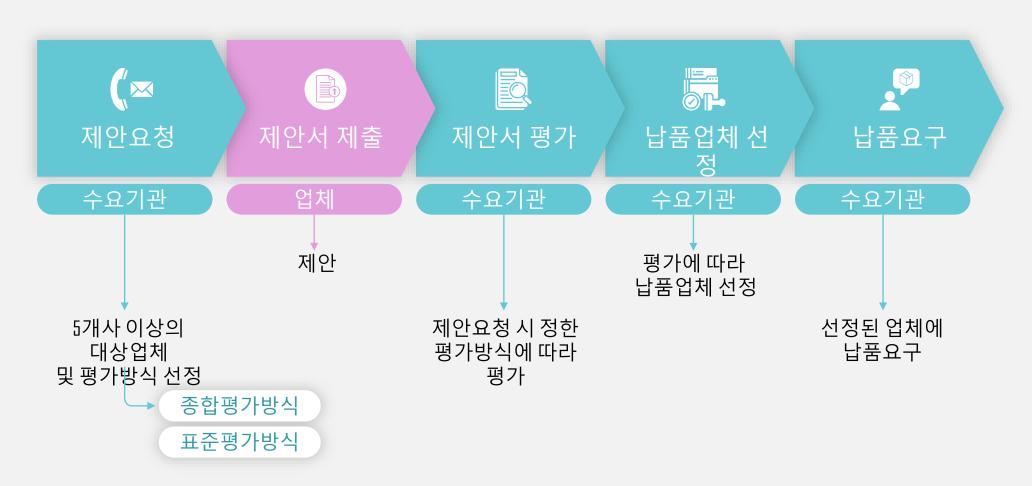
2

2단계경쟁 제안공고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I. 2단계경쟁 제안요 처



▶ 제안요청 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사전 절차 규정은 없음



2 제안요청 대상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4B조)

I. 2단계경쟁 제안요 처

2단계 경쟁 적용대상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 예산 금액 기준

* i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란, 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소기업 제조물품 1억 원 이상

일반물품 중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품(공급물품 제외)은 5천~1억원에 대하여 2단계경쟁 선택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물품, 중소기업 공급 물품 5천만 원 이상

1회 납품요구금액 계약업체 및 세부품명을 구분하지 않고, 1회에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의 합계금액

(단,'설치비'옵션금액은 I회 납품요구금액에서 제외)



3 제안요청 대상자 선정 방싊 하는 사용 대상자 선정 방송 하는 사용 대상자 변경 문항 하는 사

I. 2단계경쟁 제안요 청

5개사 이상 제안요청 대상자 선정 ⇒ 2개사 시스템에서 추가 자동선정

2개사 또는 1개사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할 수 있음

- ※ 수요기관 요구 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 가능
 - ⇒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을 5인 미만 진행 시 사유 등록 (의무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10개사 추천 ⇒ 5개사 이상 제안요청대상자 선정

계약업체가 15개사 이상인 경우에 **限**하여 이용 가능

수요기관 선택	수요기관 직접 선정	시스템 자동 선정	총 참여기업 수
5 + 2	5개사	2개사	7개사 이내
자동추천	미개사	ll기사	5개사 이상

*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할 수 없음



4 2단계경쟁 예임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50조)

I. 2단계경쟁 제안요 처

2단계경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에 예외 요청

-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농기계 임대사업, 이미 설치된 물품의 설비확충 및 부품 교환
- 관급자재 선정 심의회에서 선정된 제품 구매



2단계경쟁 예외 원칙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별도 요청 시 2단계경쟁 허용)

• 일반차량(소방차 제외), 백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 ▶ 수요기관의 희망규격 및 예산을 충족하는 업체가 1곳 뿐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 2단계경쟁이 가능(2인 이상)하도록 희망규격을 완화하거나, 규격완화가 불가능한 경우 총액입찰로 전환



I. 2단계경쟁 제안요 처

- ▶ 2단계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 납품요구할 수 없음
- ▶ 2단계경쟁 회피 방지를 위해 최근 30일 이내 동일 업체 납품요구 차단
 - * 다만, 같은 규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예산 항목이나 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 건과 상이한 경우 예외 (수요기관 증빙자료 쇼핑몰 등록)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제2항)

수요기관 유형	예산과목 체계	<u>예산비목 상이 판단기준</u>
국가기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내역	세목 이상의 과목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내역	통계목 이상의 과목이 다른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내역	세목 이상의 과목이 다른 경우
지방공기업	관-항-세항-목-세목-내역	세목 이상의 과목이 다른 경우
교육기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세목 이상의 과목이 다른 경우



I. 2단계경쟁 제안요 처

주요 분할 구매(2단계경쟁 회피) 사례 유형

납품장소별 구매

군부대, 교육청과 같이 하나의 수요기관에서 동일 예산(세목 등) 으로 구매하여 각 군부대 또는 학교로 별도 납품을 사유로 각각 분할구매하는 경우

*2단계 경쟁 대상은 '예산 및 수요기관'의 동일성 여부로 결정, 각각 납품이 될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산하기관들이 별도 구매시 문제 X

최초 구매계획 부실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하여, 추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물품 추가 구매수요가 발생하여 분할 구매한 사례

제도 이해 부족

지자체의 지역물품 구매 요청 또는 정부 권장 정책(예:여성, 장애인기업 의무물품 구매) 실적 달성을 위한 분할구매 등 제도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사업 단위별 구매

물품 구매시 예산 '세목'(국가기관등)별로 합산하여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업단위별(공구,지구등)로분할구매한사례(레미콘,아스콘제외)

내규 미흡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자체 구매지침 운용 등 수요기관 내규 미흡으로 인한 분할 구매 사례



6 제안요청 유의사항 등

I. 2단계경쟁 제안요 청

제안요청 유의사항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 옵션 품목을 제외한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ll자리)이 동일
	물품의 설치나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 분리되어 계약 체결된 옵션 품목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 관계자에게 누설 금지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	▶ 만 5일 이상 (공휴일 제외)
납품 대상업체 선정 방식	▶ 종합평가, 표준평가



7 제안요청의 취소



제안마감일 이전 취소가능

수요기관은 제안마감일 이전에는 취소 가능

제안요청 취소 :
 대상자에게 취소 사유 통보 ⇒ 나라장터에 사유 등록

평가과정 오류 시

제안서 평가과정 오류 시 재평가 실시

• 조달청에 통보 ⇒ 재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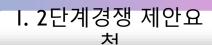
평가 완료 이후 취소가능 경우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제안요청서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제안요청서 입력오류 등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취소는 경우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8 납품업체 선정기즕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되죠)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동일점수 발생 시

동일점수 발생시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 선정

품질관리 평가항목 동점시

동점이면서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

→ 제안가격(A형) 및 제안율(B형)이 낮은 자를 우선 납품대상자로 선정

가격 및 제안율 동일 시

가격(A형) 및 제안율(B형)이 동일할 경우 추첨 (자동추첨시스템 이용 가능)

-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명시
- ▶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 3일 이내 보완 요구
- ▶ 계약조건 이외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 반영 불가
- ▶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없는 품목 등은 평가제외 가능



I. 2단계경쟁 제안요 청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 기본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가 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20점 이상, 60점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최근 2년 이내)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	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0점 이상, 20점 이하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결과		-0.25점
기본		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이내)	-0.5점
평가항목		임금체불(체불사업	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0.5점
-1.7	신인도 1.75	신인도 -1.75~ +2.5 고용우수기업	행(최근 3년이내)	-0.5점
				+1.0점
		일자리으뜸기업, HRD	우수기업, 정규직전환우수기업,	+0.5점
		기술인증	고도기술	+1.0점
			일반·녹색기술	+D.5점



I. 2단계경쟁 제안요 첫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 선택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 가능성	7.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전체등급 (최근 2년 이내)	7.5점 이하
선택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최근 3년 자료)	7.5점 이하
평가항목 (60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경영상태	7.5점 이하
	약자지원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 장,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7.5점 이하
	수출기업지원	수출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7.5점 이하



I. 2단계경쟁 제안요 청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I 수요기관 선호조합 방식

		유형		
평가분야	평가항목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가 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	50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	2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	5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 등급	5	5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지원	5	5	
	불공정행위 이력평가결과	-0.25	-0.25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	-0.5	-0.5	
신 인 도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	-0.5	
(-1.75~ +2.5)	고용우수기업	+1.0	+1.0	
	일자리으뜸기업, ዘ미 우수기업,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0.5	+0.5	
	기술인증	+1.0	+1.0	



I. 2단계경쟁 제안요 청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표 품질 및 실적 중심

		유형		
평가분야	평가항목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격의 적정성 55 45 지체 여부 15 20 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 20 품 납품 실적 5 5 행실적평가 5 5 원대상 기업 여부 5 5 인 이력평가결과 -0.25 -0.25 반 또는 임금체불 -0.5 -0.5	2억원 미만	
가 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	45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	2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	20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 실적	5	5	
사후 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	5	
수출기업지원	수출기업 지원대상 기업 여부	5	5	
	불공정행위 이력평가결과	-0.25	-0.25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	-0.5	-0.5	
신 인 도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	-0.5	
(-1.75~ +2.5)	고용우수기업	+1.0	+1.0	
	일자리으뜸기업, ዘ미 우수기업,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0.5	+0.5	
	기술인증	+1.0	+1.0	



10 남품요구(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57조,제55조)

I. 2단계경쟁 제안요 처

제안서의 유효기간 내에 납품 요구해야 함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된 경우

계약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쇼핑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납품요구 불가

→ 위 경우 새로운 제안요청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 재선정

단,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는 차 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가능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 수량증가 시 제안가격과 다량납품 할인된 금액 중 낮은 가격

설치비 등 옵션 이외에 품목의 추가 및 계약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으로 변경불가

단, '설치비' 등 2단계경쟁 대상 제외 가능한 옵션품목은 납품요구 시 추가가능 업체동의 시 최초 납기를 희망 납품기한으로 설정 가능

(단,계약기간 종료일+240일이내)

계약기간 내에는 상호 협의하에 자유로운 납기 연장 가능, 업체 희망 시 납품요구취소 이후 신규 납품요구 허용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간



311 공동수급체 운영(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55조의2[별첨])

I. 2단계경쟁 제안요 처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위해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토록 운영 가능

공고내용

- 수요기관명
- 2단계경쟁 건명
- 대상 세부품명
- 예산액
-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

공고기간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제안요청일 및 마감일 제외)

구성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상 구성 (구성원 수를 제한할 수 없음)

등록

동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같은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음

* 단, 가구류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을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하려면 의무적으로 2단계경쟁 공동수급 공고를 제안요청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함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안내 **CONTENTS**



1

2단계경쟁 제안요청

2

2단계경쟁 제안공고



1 2단계경쟁제안공고(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52조의2[별첨])

II. 2단계경쟁 제안공

.

제안공고

수요기관의 제안공고 (규격 및 평가방법 선정)

▶ 5억원 이상 구매시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따라 제안공고 실시 (의무)

※단, 5억원 미만도 수요기관이 선택 가능



가격제안

업체의 물품등록 및 가격제안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 (종합평가, 표준평가)

▶ 기본평가 항목(신인도 제외) 점수 상위 5인을 대상으로 종합심사

평가

수요기관의 제안공고	업체의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납품요구 및 납품	대금지급	
규격, 수량, 예산, 평가방법 등을 공고	공고 충족 물품 등록 및 가격 제안서 제출	제안규격 사전판정 및 제안서 평가 (표준,종합평가)	선정된 업체에 납품 요구	전자적 대금지불	

2 대상, 등록, 평가방법

Ⅱ. 2단계경쟁 제안공

제안공고 적용 대상: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금액 기준 5억원 이상(의무)

- ▶ 제안공고 적용 제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의3 제1항 각호)
 - 가구류 등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구매,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
- 운반비 미포함 물품, 별도 원가산출프로그램 활용 물품 (배전반, 엘리베이터 등)
-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안공고 등록

- ▶ 세부품명, 희망규격, 수량, 예산, 평가방법을 포함한 공고를 종합쇼핑몰에 등록 (만 5일 이상)
 - ※ 공고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 등록된 업체 중 최소 3인 이상의 공통규격으로 희망 규격 작성
 - ⇒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제안공고 등록 메뉴에서 입력하고, 계약업체는 제안공고 목록을 조회하여 확인 가능

납품대상업체 평가방법

- ▶ 종합평가방
- 시 제안서 제출자 중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 5인을 대상으로 전체항목(선택항목 및 신인도) 평가
- ▶ 표준평가방
- 식 제안서 제출자 중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 5인을 대상으로 전체항목(나머지평가항목 및신인도)평가

3 조달업체의 물품등록 및 제안서 제출

II. 2단계경쟁 제안공

제안대상 물품은 제안공고 게시 **전일**까지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대상

※ 제안자는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 필수 제출

제안가격은 제안공고 게시 전일 기준 등록된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가능

제안가격은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이하

- ▶ 할인행사, 다량납품 할인 → 할인된 최저가격 이하
 - * 참고: 가격 평가 유형 중 B형(제안율) 평가 시에는 기존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제안율=제안가격/계약가격)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계약가격의 **90**%까지만 허용
 - * 다량납품 및 할인행사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가격평가 시 제안율을 90%로 평가 (단, 제안가격(납품가격)은 할인율 적용 가격)

※ 최종제안한가격이 공고된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제안공고참여불가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제안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 후는 취소 불가 (재 제안 불가)

Ⅱ. 2단계경쟁 제안공

제안공고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가능

 단, 제안공고에서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 제안평균가격 또는 평균제안율 산출에 반영

> 제안서 평가 시 MAS계약 조건 이외의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 불가

선호도 평가는 제안요청(평가 이전 실시)과 달리 평가과정에서 실시

• 사전 판정 이후, 기본평가 항목 상위 5인에 대한 제품 및 업체정보를 확인하여 선호도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는 경우에 다음 단계 진행가능 기타 부분은 같은 규정 제**53**조 제**2**항 내지 제 **5**항 의 평가 방법에 따름

감사합니다

